

축산업계

소식

육용종란 총3백55만4천여개 추천 받아

농림수산부는 최근 폭염으로 인해 종계의 피해가 극심하여 실용병아리 생산성이 저하되어, 초생추가격이 초강세를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지정 계열화 업체인 (주)하림에서 지난 17일 네덜란드로부터 육용종란을 수입한데 이어 지난 9일과 12일 추천 받은 물량과 품종을 보면 중국 코브 18만개, 호주 코브 77만4천개, 네덜란드 코브, 하이브로 아바에이카, 에이비안 3품종에 각각 65만개 등 총 3백55만4천여개를 추천받아 수입할 계획이었으나 중국산은 검역절차상 문제가 있어 수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폭염피해 양축자금 총 82억 지원

농림수산부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 피해를 입은 양축농가에 지난 25일 1차로 30억원

을 지원한데 이어 특별양축자금 2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지난 5일 결정했다.

이로써 폭염피해 양축자금 지원액은 축협에서 지원한 일반양축자금 32억원과 농림수산부에서 지원한 특별양축자금 50억원을 합하면 총 82억원이 된다.

각 도별 지원된 배정자금을 보면 △강원도 4억원, △충북 2억원, △충남 6억5천만원, △전북 14억원, △전남 14억원, △경북 13억원, △경남 18억원, △경기도 10억5천만원 등이다.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 실시 요령(안) 제정

농림수산부는 지난 8일부로 최근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되었을 경우에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조치를 실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근절시킴으로서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국민보건을 위해 방지 하고자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 실시 요령(안)(위생 51580-380)제정, 수정·보완을 거친후, 시행일은 이 요령이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1장 : 총칙

제1조(목적)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되었을 경우에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조치를 실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근절 시킴으로서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국민보건 위해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요령에서 “해외악성가축전

염병(이하 “전염병”이라 한다.)이라 함은 구제역 등과 같이 국내에 발생하고 있지 아니한 가축전염성질병으로서, 국내에 유입될 경우 축산 및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② 이 요령에서 “환축”이라 함은 전염병에 걸려있는 가축을 말하고 “의사 환축”이라 함은 환축으로 의심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과 전염병의 병원체에 접촉되었거나 접촉되었다고 의심이 있는 가축을 말한다.

③ 이 요령에서 “발생지”라 함은 환축 또는 의사 환축이 발생된 축사 및 그 주변을 말한다.

④ 이 요령에서 “오염지역”이라 함은 전염병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지역으로서 발생지를 중심으로 하여 변경 10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당해 지역의 지리적 여건이나, 계절적인 요인 또는 당해 전염병의 역학적 특성에 따라 오염지역의 범위를 확대, 축소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⑤ 이 요령에서 “경계지역”이라 함은 오염지역으로부터 전염병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발생지를 중심으로 반경 10km에서 20km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당해 전염병의 역학적 특성에 따라 경계지역의 범위를 확대, 축소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가축방역 기본원칙) ① 이 요령은 구제역 방역 실시 요령으로 한다. 다만, 기타 전염병에 대하여는 구제역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실시하되 당해 전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특성에 따라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역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염병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축 및 의사 환축은 신속하게 살처분 하여야 하며, 폐사체는 발생 장소에서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의 입회하에 소각 또는 매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염병은 병원체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물 등은 적절히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④ 발생지의 축사 및 인근지역에 대한 소독실시, 살처분 및 병원체의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가축, 사람, 물품 등의 이동, 반입 및 반출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오염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가축의 이동제한을 명하고 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가축집

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장관이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제②항에 의하여 살처분한 가축과 폐기 처분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장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제4조(의사환축발생시 조치사항) 전염병에 걸린 환축 또는 의사환축을 발견한 가축의 소유자 또는 수의사로부터 신고를 받았거나, 환축 또는 의사환축을 발견한 가축방역관은 일정한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고받은 내용 등을 즉시 시도지사(축산과장)에게 전화 보고하고 지시를 받을 것.
2. 당해가축의 발생장소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것.
3. 당해 가축의 축주, 관리인 및 가족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삼가고, 물건의 반출을 금지시킬 것.
4. 발생장소내의 모든 동물을 환축 또는 의사환축과 격리하여 계류시키고 이동을 금지할 것.
5. 축사내외, 물건, 사람에 대한 소독을 실시할 것.
6. 병성감정용 가검물 채취는 가축위생연구소 관계관이 실시할 것.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시도지사 조치사항) 가축방역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고받은 내용 등을 즉시 농림수산부장관(가축위생과장) 및 인근시도지사에게 전화보고(통보)하고, 농림수산부장관의 지시를 받을 것.
2.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가축위생연구소의 관계관이 병성감정을 즉시 실시할 수 있도록 가축위생연구소에 협조 요청한다.
3. 방역대책본부의 설치를 준비하고, 병성감정결과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즉시 “○○도 ○○병 방역대책 본부”를 설치·운영한다.
4. 오염지역, 경계지역을 설정하여 방역에 대비하여야 하며, 당해 축사시설내에 동물출입을 통제한다.
5. 발생장소에 대한 가축의 이동상황, 출입자 현황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일정한 서식에 의한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 6 조(농림수산부 조치사항) 시도지사로부터 보고받은 농림수산부장은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농림수산부장은 보고받은 내용에 대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시하고, 국립동물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장에게 병성감정에 필요한 준비 및 관계관 파견을 지시하여야 한다.

2. 전염병 환축 또는 의사 환축 발생사실을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의거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하며, 이후 그에 대한 병성감정결과도 보고하여야 한다.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 7 조(가축위생연구소의 조치사항) 전염병의 환축 또는 의사환축 발생에 대하여 가축위생 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농림수산부장으로 부터 지시를 받거나, 시도지사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관을 발생지에 급파한다.

2. 가축위생연구소 관계관은 시료채취 및 병성감정 준비물을 갖추어 지체없이 현장에 도착하여 가축방역관의 협조 아래 시료 채취 및 병성감정을 실시한다.

3. 가축위생연구소장은 병성감정 결과를 농림수산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받은 농림수산부장은 그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 및 타 시도지사 및 동물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8 조(입의 병성감정 및 실험의 금지) 전염병에 걸린 환축 또는 의사환축의 시료채취, 부검, 병성감정, 진단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실험은 가축위생연구소 관계관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하며, 타인에 의한 입의 조치는 금지한다.

1. 가축방역관은 사체에 대한 시료 채취, 부검, 병성감정 등을 수행하는 과정중에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이 나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소독 조치를 철저히 행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실을 가축위생연구소 관계관에 통보한다.

2. 가축방역관은 질병의 진단을 위한 각종 실험도 중 전염병으로 의심하는 경우에는 진단 및 실험을 즉시 중단하고 그러한 사실을 가축위생연구소 관계

관에 통보한다.

제 3 장 병성감정결과 양성판정시 조치사항

제 9 조(발생사실 발표) 농림수산부장은 병성감정결과 전염병 양성판정시에는 병명, 발생장소, 발생경위, 방역조치개요 등을 대하여 오염지역 및 경계지역의 양축농가에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제 10 조(긴급방역조치) ① 해당 시도지사는 축사입구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전염병 발생사실과 출입금지를 표시한 일정한 경계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시도지사는 전염병 병원체의 오염우려가 있는 마당, 도로, 의류, 기구 등 모든 물품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사료, 비품, 시설물 등을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③ 법 제 9 조 및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살처분할 대상동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축과 동거하였거나 동거하는 가축
2. 환축이 소재하는 축사와 동일시설내에 있거나 동일관리인에 의해서 사양되는 감수성 동물
3. 환축 또는 의사환축과 접촉한 수의사, 인공수정사 및 기타 관리인 등과 접촉한 감수성 동물
4. 기타 사유로 전염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감수성 동물

④ 폐사체 및 살처분한 가축을 매몰할 경우에는 법 제 13 조의 매몰기준외에 다음의 기준을 추가한다.

1.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발생지 또는 인근지역에 매몰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밀봉하고 냉장 또는 냉동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후에는 차량 내부를 즉시 2% 가성 소다액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2. 매몰장소는 4~5m의 깊이로 파서 매몰하고, 폐사체는 2m 이상 흙을 덮고, 매몰된 사실과 발굴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⑤ 발생지 소독요령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하며 구체적인 소독방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 5 조 관련에 의한다.

1. 농장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출입구에는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환축 또는 의사환축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고 의심되는 기구, 피복 등을 모아서 소독약에 침적하거나 자비하여야 한다.
3. 농장전체에 대하여 충분히 소독하여야 한다.

4. 정화조, 하수구 및 배수구에도 소독약을 투입하여야 한다.

5. 쥐 등 야생동물과 전염병 매개 곤충에 대한 구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소독약은 2% 가성소다, 2% 가성가리, 4% 탄산소다, 10% 포르말린액의 증기 소독을 1주간격으로 3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7. 관리인 등의 출입에 의한 바이러스비산방지에 유의하고, 특히 외부로 출입할 경우에 충분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호의 오염물품에 대하여도 제5항의 소독방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동물의 부분(육, 골, 장기, 혈액, 기타)
2. 동물의 생산물(생유, 정액, 계란, 털, 가축 기타)
3. 동물의 배설물(분, 뇨)
4. 농장의 사료, 건초, 볏짚, 깔짚 기타
5. 차량, 기구류, 용구류 기타
6. 진료 및 관리에 사용한약품류, 기구류, 용구류 기타

제11조(추적조사) ① 가축방역관은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발생일로 부터 21일전까지의 가축의 이동사항에 대한 추적조사 및 7일전까지의 수의사, 관리인, 인공수정사 등과 접촉여부등을 추적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추적조사결과 가축의 이동 또는 접촉이 있었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 해당농장에 대하여는 오염지역에 준하여 가축의 이동제한, 출입자 통제, 소독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환축과 7일전까지 접촉한 것이 확인된 감수성 동물은 살처분 및 소각 또는 매몰하여야 한다.
3. 기타의 농장에 대하여는 접촉의 정도, 경과일수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오염지역 조치) ① 오염지역 지정은 최소 행정단위의 구역, 도로, 하천, 철도, 기타 구분이 명확한 지역으로 정하고 진입로에 “○○병 오염지역”의 간판을 식별이 용이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오염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기간은 최초 발생 후 3주간으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 오염지역에 대한 조치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감수성 동물은 이동을 제한한다.

2. 도축장, 가축시장은 폐쇄한다.

3. 생유는 오염물품으로 인정하여 조치하고, 가축에 사용을 금지한다.

4. 인공수정을 금지한다.

5. 축사내외 소독, 출입자 통제 등을 실시한다.

6. 사용한 가축 관리 용구, 사료 및 분뇨 등의 이동을 금지한다.

제13조(경계지역 조치) ① 경계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기간은 최종 발생 후 3주간으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② 경계지역에 대한 조치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감수성 동물은 경계지역이외의 장소로 이동을 금지한다.
2. 가축시장에는 도축용 이외의 가축의 출입을 금지한다.
3. 가축경진회 등의 개최를 금지한다.
4. 생유는 가축에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5. 축사내외, 출입자 통제 등을 실시한다.

제14조(예방약) 농림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의 예방약을 구입하여 비축하거나 예방약을 긴급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5조(예방접종) 농림수산부장관은 예방접종이 필요한 경우에 비축중이거나 수입된 예방약을 해당 질병 방역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조치한다.

제16조(가축방역대책본부 업무) ① 전염병 발생에 따라 설치된 방역대책본부(농림수산부, 각 시도)는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전염병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② 방역대책본부에는 서무반, 병성감정반, 역학조사반을 두어 업무를 분장하며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사후조치) 당해 시도지사는 발생지 오염지역, 경계지역에 대하여 방역조치가 완료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확인조사를 통해 재발생 및 전파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기 타

제18조(병원체 취급)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전염병의 병원체 수입을 금지하며,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그러한 사실을 가축위생

연구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수입된 병원체의 취급은 차폐연구시설내에서만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세

재무부는 지난 18일, 오는 '95년부터 축산기자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는데, 재무부가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 중 내년부터 농림어업용 기자재 뿐 만 아니라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데 양축가들의 최대관심 대상인 시행시기는 법개정이 이루어져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기질비료 판매 자유화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양축농가는 앞으로 경종농가에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고, 또 가축분뇨를 원료로 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의 판매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게 된다.

농림수산부는 지난 22일 비료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UR이후 WTO체제 및 그린라운드에 대비한 농업토양환경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비료관리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가축분뇨비료(유기질비료)를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규제를 완화하고, 양축농가가 생산한 유기질비료를 경종농가와 직접 거래할 경우 비료관리법 적용대상에서 배제, 자유로운 판매를 보장토록 했다.

현재 허가사항인 유기질 비료생산을 등록제로 전환, 등록제인 판매업을 신고제로 완화하고 유기질비료 생산 및 판매에 따른 시설기준 폐지와 함께 판매업과 관련한 시·도 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 이양토록했다.

아울러 이번 비료관리법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여론수렴을 거친후 당정협의 및 법제처 심의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토록 했다.

한국가금학회

닭고기 가공과 유통에 관한 세미나 개최

한국가금학회(회장 한성욱)와 한국축산 식품학회(회장 양용)가 공동주최한 “닭고기 가공과 이용에 관한 세미나”가 업계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일 축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충북대 최양일 교수의 “닭고기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신제품 개발”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이유방 박사가 “닭고기 가공기술의 최근 발전동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또한 미국육계협회 Michael James씨가 “효율적인 닭고기 유통”, 통합경영연구회 박영인 박사의 “WTO체제하의 육계산업 대응책”이란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종합토론의 시간도 함께 가졌다.

전국 한우경진대회로 대회명 변경

농림수산부와 축협중앙회는 최근 축진대회 명칭인 축산진흥대회를 전국한우경진대회로 명

칭을 변경하고, 오는 10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경기도 과천시 소재 한국마사회 보조 경기장에서 전국한우경진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제132차 가축질병 예찰결과 보고

가축위생연구소는 지난 20일부로 제132차 가축질병 예찰협의 결과보고(병리 27523-230)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가축질병예찰내역 (가축위생시험소 : 6월)

예찰 농가수	가축별	조사두수	발생두수 (%)	주요 질병
1,152	소	26,126	226 (0.87)	○독우하리(32), 운선증(14), 유방염(67), 부제병(7)
	돼지	255,146	672 (0.26)	○설사증(93), 위축성(60), 대장균증(147), 장결절충(115)
	닭	2,295,690	73,454 (3.20)	○가금티프스(30,000), IB(3,625)
	기타	30,053	16 (0.05)	
	계	2,607,015	74,368 (2.85)	

2. 가축질병예찰통보상황 (농촌지도소 : 6월)

통보수	가축별	조사두수	발생두수 (%)	주요 질병
344 (63.4%)	소	31,193	405 (1.29)	○부루셀라(41), 독우하리(116), 유방염(113), 척추만곡증(14)
	돼지	125,025	349 (0.28)	○설사증(35), 대장균증(56), AR(25), HC(25), 열사병(133), 돈단독(40)
	닭	1,521,830	1,864 (0.12)	○IB(1,550), MG(120)
	계	1,678,048	2,618 (0.15)	

*지도소 181개소 각소당 월 3회 통보

3. 가축위생시험소 병성감정결과 (6월)

축종	조사두수	발생두수	폐사두수	발생 질병
한우	1,475	96	18	○홍막폐렴(2)*, 독우하리(1)*, 장독혈증(6)*, 중독증(2)*
젖소	9,776	656	72	○유방염(311), 타일레리아병(135), 대장균증(59)*, 설사증(12)*
육우	6,180	95	1	○부루셀라병(28), 타일레리아병(66)
돼지	98,867	10,495	1,048	○대장균증(272)*, 홍막폐렴(66)*, HC(42)*, 부종병(118)*, 살모넬라균증(323)*
닭	1,071,290	205,306	30,334	○대장균증(17,092)*, 살모넬라균증(2,900)*, IB(2,299)*, 포도구균증(1,400)*, 콕시들통(1,281)*
계	1,187,588	216,648	31,473	

동물의약품 제조·수입품목 신고제로 변경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이 지난 20일 농림수산부령 제1153호 개정, 공포됐다. 개정된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은 지난 1월7일 법률제 4731호로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중 개정된 내용 주요골자는 △동물용의료용구 및 동물용위생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품목신고제로 변경, △동물용위생용품의 판매업은 등록대상에서 제외, 판매장소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판매, △동물용의약품등의 취급자의 범주에 동물용의 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개선자를 추가함 △행정처분 기본을 현실에 맞도록 일부 완화, 조정하고 동일한 위반사항의 횟수가 3차 이상인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들 수 있다.